시정명령처분등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09. 5. 14. 2008누2530]



【전문】

【원 고】한미약품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외 2인)

【피 고】공정거래위원회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)

【변론종결】2009. 3. 12.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가 2007. 12. 20. 전원회의 의결 제2007-55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1,520,0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-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 중 7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피고가 2007. 12. 20.에 전원회의 의결 제2007-55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 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.

[이유]

】I. 처분의 경위

[이유]

】I. 처분의 경위